

지하수법 제6조에 따라 「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(2012~2021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12. 28.

국토해양부장관

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(2012~2021)

1. 수립배경

- 지하수법 개정 등 제도변화와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('11년), 가뭄 심화 등 최근의 지하수관리 여건변화에 대응하여
 -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지하수 활용과 보전에 필요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

2. 주요내용

□ 계획의 근거 및 성격

- 근거 : 지하수법 제6조(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)
- 성격 : 지하수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먹는 샘물, 온천수 등을 포함한 계획으로,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·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·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

□ 계획의 범위

- 시간적 범위 : 2012~2021(10개년)
- 공간적 범위 : 전국

□ 계획의 주요 내용

- 비전 :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
- 목표 :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가치 증대 및 공적자원인 지하수의
보전·관리 선진화
- 주요 추진전략
 - 지하수의 활용가치 극대화
 - 지하수의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보전·관리
 - 지하수의 수질보전·관리 선진화
 - 지하수의 지속적 조사·관측·연구 통합·확대
 -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하수관리 선진화
-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
 -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특성으로 인해 동부 고지대에서는
지하수 함양, 서부 저지대에서는 배출이 우세
 -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28.9억 m^3 /년이며,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
비율은 전국 평균 29.5%임

□ 분야별 주요 내용

- 개발·이용 계획
 - 가뭄 등 재해대비 지하수지원체계 구축과 도서·해안 등 물공급
미수혜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추진 등 지하수 활용가치 극대화
- 보전·관리 계획
 - 방치공 대책수립, 보전구역 지정 활성화 등 보전·관리를 통한
미래가치 확보

- 수질관리 계획
 - 수질관리 다원화(심도, 대수층, 지역별) 및 등급별 관리, 취약지역 수질검사 비용지원 등 수질보전·관리 선진화
- 조사·관측·연구개발 계획
 - 기초조사 보완조사 실시(10년 단위), 지하수 관측망 통합관리, 지하수정보 연계관리 등 통합·확대
- 관리기반 계획
 - 지하수법의 기본법 역할 강화,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지원, 교육다변화 및 홍보강화 등 관리기반 강화

3. 관련자료 열람방법

-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.
 - 열람장소 :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및 시·군·구 지하수담당부서
 - 열람기간 : 공고일로 부터 30일간
 - 인터넷 홈페이지
 - * 국토해양부(<http://www.mlrm.go.kr>, 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훈령·예규·고시)
 - * 국가지하수정보센터(<http://www.gims.go.kr>, 법령및정책→지하수관리기본계획)
-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(☎ 044-201-3599~3601, 팩스 042-201-569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